

제3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

2026. 6. 12.(금) 10:00

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

# 심 사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 
운영위원회



#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2026. 6. 9.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 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6년 6월 9일

나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다. 상정결과 :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2차 운영위원회(2026. 6. 9.) 상정·의결(의회운영위원회안 채택)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의회운영위원장 이광규)

### 가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보완하고, 제10대 의회부터 종로구의회 의원 정수가 11명에서 10명(비례 1명 감소)으로 조정됨에 따라,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비하고, 의안의 제출·발의 및 의장·부의장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, 조문 표현을 정비함.(안 제14조제3항)
- 의안의 제출·발의 주체, 의원 발의요건 및 상임위원회·특별위원회의 의안 제출 범위를 규정함.(안 제16조의2)
-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함.(안 제19조제3항)
-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제61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함.(안 제22조의2)
- 의원정수가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,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“5명”에서 “5명 이내”로 조정하고, 상임위원회 설치 조항의 제목 및 불필요한 단서 규정을 정비함.(안 제23조)
-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임직원의 범위에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관계자를 추가하고, 기관 명칭 및 표현을 정비함.(안 제62조)

### **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회의록 참고)**

### **4. 토론 요지 : 생략(회의록 참고)**

### **5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**

### **6. 심사결과 : 의회운영위원회안 채택**

(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함)

#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

2026. 6. 9.  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 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6년 6월 9일

나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다. 상정결과 :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2차 운영위원회(2026. 6. 9.) 상정·의결(의회운영위원회안 채택)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의회운영위원장 이광규)

### 가. 제안이유

현행 회의 규칙의 운영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보완하고, 의장·부의장 선거시 후보자 등록 후 사퇴 절차를 마련하며, 종로구의회 의원정수가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, 본회의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정족수와 발의요건을 비율 기준(분수식 표기)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 또한 전원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등 회의 운영의 명확성과 법적 정합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의원의 청가 및 결석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, 청가서 및 결석계서식을 신설함(안 제4조제1항·제3항 및 제4항, 별지 제5호·제6호서식)
- 의장·부의장 선거 후보자 사퇴 절차를 신설하고, 후보자 사퇴신청서서식을 마련함(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, 별지 제2호의2서식)
-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을 본회의 시작 2시간 전에서 본회의 개의일 전날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함(안 제35조제3항)
- 「지방자치법」상 기록표결 원칙에 맞추어 표결방법, 표결 참가 시점 및 투표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39조, 제41조, 제43조 및 제44조)
- 전원위원회 규정을 삭제함(안 제68조)  
행정안전부 「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」에서 지방의회는 조례로 전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, 법적 정합성과 회의규칙 체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전원위원회 규정을 삭제.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관련 인용조문을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 및 「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48조로 정비하고, 위원 제척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함(안 제92조제1항 및 제4항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회의록 참고)

### 4. 토론 요지 : 생략(회의록 참고)

### 5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의회운영위원회안 채택

(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함)

#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2026. 6. 9.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 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6년 5월 26일

나. 발 의 자: 이륜구(대표발의)·이광규·이시훈·정재호·이응주·박희연  
의원

다. 회부일자: 2026년 5월 29일

라. 상정일자: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 
제2차 운영위원회(2026. 6. 9.)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 (대표발의: 이륜구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 따라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하는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서 제도화 하고, 행정안전부의 ‘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’에 따른 권장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

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의 전문성 제고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정책지원관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(안 제2조)
- 정책지원관은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 배치를 원칙으로 함(안 제3조)
- 임기제로 임명할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로 추가 연장 가능(안 제4조)
-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명시(안 제5조)
-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등 직무제한 사항(안 제6조)
-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(안 제7조)
- 비밀엄수 의무 및 의무 등 위반에 대한 조치(안 제8조 및 제9조)
- 교육 훈련 실시 및 평가 반영(안 제10조)
- 고충처리 지원(안 제11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회의록 참고)

4. 토론자 및 토론 요지 : 없음

5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( 이륜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)

